

# 부산대학교병원 의료기관 공용윤리위원회 위탁 협약 관련 안내

## ① 부산대학교병원 의료기관 공용윤리위원회 개요

- 본 부산대학교병원 의료기관 공용윤리위원회는 「호스피스·완료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(이하 '연명의료결정법') 제14조 제5항에 따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업무를 위탁받도록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았음

명 칭	부산대학교병원 의료기관 공용윤리위원회
소재지	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79
관 할	부산광역시, 울산광역시, 경상남도
담당자 연락처	051-240-7716

※ 위탁기관은 본 협약을 한 후 협약서를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(intra.lst.go.kr)에 등록하여야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 업무를 개시할 수 있음

## ② 공용윤리위원회 업무 위탁 범위

- 위탁기관은 공용윤리위원회와의 협약을 통해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과 관련한 심의·상담·교육 등 아래의 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음
- (상담) 위탁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관련하여 환자·환자가족·의료인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상담을 제공함
  - 상담 제공 시간 : 월~금 (9:00~17:00), 단 공휴일은 제외
  - 상담 제공 방법 : 1. 전화상담(051-240-7716)  
2. 상담일지 작성(연명의료 문의 시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가 작성)
  - 상담 후 공용윤리위원회는 해당 기록을 보관함(위탁기관의 요구 또는 필요에 따라 기록을 공유 또는 제공할 수 있음)
- (교육) 위탁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와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연명의료 및 의료윤리 관련 교육을 실시함
  - 교육 방법 : 집합교육
  - 제공 시기 : 연 1회 실시(추가교육 : 협력기관과 협의 후 실시)
  - 교육 내용 : 연명의료결정법 주요 내용(관련법률, 작성대상·방법,이행,심의 및 절차)
  - 교육 시행 후 공용윤리위원회는 교육 내용 및 이수자 명단 등을 기록하고 관리함
- (심의) 위탁 의료기관에서 신청한 상담 중 윤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또는 담당의사가 이행 거부 시 담당의사 교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

- 심의신청절차

1. 심의 신청서 작성 : 심의 원하는 협력 요청 의료기관 신청자(위탁기관 의사 또는 위탁기관 이용 환자 및 보호자)는 전담인력과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
2. 심의 상정서 작성 : 공용윤리위원회 간사는 “심의 상정서(병원 서식)” 작성 후 공용윤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상정( 규정의 회의 개최 기준에 의거)
3. 심의 회의 개최 : 공용윤리위원회 심의 회의 개최

-부산대학교병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규정에 의거

·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‘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하여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환자가족 또는 의료인이 요청한 사항에 관한 심의’와 ‘담당의사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을 거부하여 담당의사 교체에 관한 심의’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4.심의 결과 통보

- 회의개최기준 :

- 위원장 또는 위원 2인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의 개최
-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등과 같은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회의 개최

- 회의방법 :

- 심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함, 긴급한 상황에서는 서면 심의로 진행할 수 있음

- 심의 후 공용윤리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위탁기관 및 심의 신청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회의록 및 관련 기록을 보관함(필요한 경우, 관련 서류를 제공할 수 있음)

- (기타) 위탁기관에서 시행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의 실적 및 통계 분석 등을 통해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함

### ③ 협약 체결 기준 및 절차

- (협약기간) 협약 기간은 협약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하며 연장 가능(별도의 요청이 없으면 자동연장을 원칙으로 함)
- (신청절차) 신규협약신청 ➡ 서류검토 ➡ 검토결과 안내 ➡ 협약체결
- (신청방법) 온라인 신청 (이메일) 또는 원본서류 우편 신청 등
- (신청 시 제출서류)
  -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업무 위탁 협약신청서 1부
  -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본 1부
  - 기타 협약을 위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(진료과목, 병상 수 및 의료진 규모 등 위탁기관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)

- (협약체결방법) 위탁기관장 및 부산대학교병원 공용윤리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날인한 공용윤리위원회 업무 위탁 협약서 2부(각 1부씩 보관)
  - (제출방법) 원본서류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
  - (주 소) 부산 서구 구덕로 179 공공보건의료사업실(융합의학연구동)

#### 4 위탁 협약 비용 납부

- (협약 비용) 기본 200만원/년 (심의 의뢰 시, 1건당 15만원 추가)

기본 (200만원)	상담	업무시간 중 수시 응대 (전화 상담, 온라인상담 등 실시)	15만원*12개월=180만원
	관리	공용윤리위원회 기본 지침 교육 자료 및 정보 공유 및 제공 기타 연명의료관련 기관 문의응대 등	
	교육	연 1회 집합교육 제공 ※ 추가교육 실시 여부 및 그 형태, 비용 등은 공용윤리위원회 운영과 무관하게 기관 간 합의로 결정	20만원
추가	심의		의뢰 건당 15만원

※ 병상수가 300개 이상인 의료기관이 공용윤리위원회에 윤리위원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별기준에 따른 위탁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

- (납부 기간) 협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용윤리위원회 운영협의회 사무국에 납부
  - ※ 추가 심의건 발생 시 해당 심의 접수 완료 후 심의비 청구
- (입금 계좌)
  - 예 금 주 : 공용윤리위원회 운영협의회 사무국((재)국가생명윤리정책원)

#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업무 위탁 협약신청서

기 관 정 보			
의료기관명			
기관장 성명			
소재지			
전화번호			
기관구분	<input type="checkbox"/> 병원 <input type="checkbox"/> 요양병원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(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)		
진료과목			
의사 수		병상 수	

담 당 자 정 보			
성명			
소속 및 직위			
전화번호		이메일	

협 약 사 항	
협약신청사유	
협약신청기간	협약체결일 ~ 협약체결일로부터 (    )년

위와 같이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업무 위탁 협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신청일자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년            월            일

협약신청의료기관장: \_\_\_\_\_(인)

0000의료기관 공용윤리위원회 위원장 귀하

# 공용윤리위원회 업무 위탁 협약서

00 의료기관(위탁기관)과 00 의료기관 공용윤리위원회(수탁 공용윤리위원회)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업무의 위탁 수행을 위하여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하고,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## 제1조 【목적】

본 협약서는 「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결정에 관한 법률」 제14조 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업무의 위탁 수행과 관련하여 위탁기관과 수탁 공용윤리위원회 간 구체적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 【위탁 업무】

- 가. 위탁기관의 환자 및 환자가족이 요청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상담
- 나. 위탁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환자가족 또는 의료인이 요청한 사항에 관한 심의
- 다. 위탁기관에서 요청한 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담당의사 교체에 관한 심의
- 라. 위탁기관의 의료인에 대한 의료윤리교육
- 마. 위탁기관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통계 분석,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

### 제3조 【공용윤리위원회의 의무】

공용윤리위원회는 위탁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되, 해당 업무를 수행할 시간, 장소, 방법 등 위탁 업무의 수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협약 당시 위탁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
### 제4조 【위탁기관의 의무】

위탁기관은 위탁 업무의 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용윤리위원회가 제시한 계획을 기관 내에 안내하고, 소속 의료인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, 공용윤리위원회가 협약 이행을 위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
### 제5조 【위탁 비용】

위탁기관의 장은 업무 위탁을 위하여 「공용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 별표2의 위탁비용을 협약 개시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용윤리위원회 운영협의회 사무국에 지급하여야 한다.

### 제6조 【비밀 유지】

양 협약기관은 본 협약 또는 법령 등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호 동의 없이 본 협약과 관련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.

### 제7조 【효력 및 유효기간】

본 협약은 양 협약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. 단,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까지 해지에 대한 별도의 서면통보가 없는 경우 자동적으로 1년씩 그 효력이 연장된다.

**제8조 【협약의 해지】**

협약에 따른 의무 위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일방에 의해 협약이 해지될 수 있다. 이 경우, 해지 기관은 그 사유를 공용윤리위원회 운영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위탁기관과 수탁 공용윤리위원회는 본 협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하고 사본 1부를 공용윤리위원회 운영협의회 사무국에 송부한다.

년 월 일

00 의료기관의 장

00 의료기관  
공용윤리위원회 위원장

\_\_\_\_\_

\_\_\_\_\_